##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25. 2007고합1096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박종범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 외 3인

## 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 3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), 4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)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.
- 2.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각 1일을 피고인 3, 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- 3. 다만, 피고인 3,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4. 피고인 3,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.
- 5. 피고인 1, 2, 5, 6, 7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